의 안 검 토 보 고

- 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- 2. 건 명: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- 3. 안건요지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. 3.

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



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995. 3.

내무위원회 전문위원

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1995. 2. 28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. 3. 14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 이 유

대통령령인 "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"이 '95. 1. 1.자로 "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"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설치 조례상에 명시된 규정의 명칭을 변경하고,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서장을 지방직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제1조에 명시된 "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"을 "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"로 변경함. (안 제1조)
- 나. 소방서장을 "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"에서 "지방소방정"으로 변경함. (안 제3조 제1항)

3. 검 토 의 견

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"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"이 지난 1월 1일자로 "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"으로 개정 시행됨

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규정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,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보하도록 한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직으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임.

주요내용으로는

현행 조례 제1조에 명시된 "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"을 "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"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의 소방서장 직급을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에서 지방 소방정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.

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